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0일

적량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오**	오** 1957-08-05	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	거주불명등록 2019-10-10
강**	강** 1965-11-08	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	거주불명등록 2019-10-10